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5
----------	----

2014년 9월 22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4년 9월 4일,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4.9.22.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문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도시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법정계획으로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근거 신설(안 제 4조제5항)

- 법령 개정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행위 제한방식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하던 방식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30조~제35조, 별표 2)
- 법령 개정에 따라 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규정과 관련 조문 및 대상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수정 내용 반영(안 제54조11항)
- 법령 개정으로 방재지구 내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완화범위 규정(안 제54조제13항, 제55조제19항)
-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별건축물이 종류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안 제15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3호, 제39조제1항제15호, 제43조제2항제6호, 제44조제1항제9호, 제47조제12호, 제48조제16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사항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 규제 없음
-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라. 기타

- 입법예고 (2014.3.27.~4.16.) 결과 : 따로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 결과 : 해당 없음
- 비용추계 등 자료 : 미첨부

### 4.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먼저,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성·계층·인종·지역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여성가족정책실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소 선언적·상징적 규정으로 보임.
- 둘째, 안 제30조~제35조 및 별표 2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행위제한방식을 상위 법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던 방식(포지티브방식)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현재 수준의 건축행위제한으로 재정리한 것이며<sup>1)</sup>,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이는 지난 2013.7.10.~20.14.1.16 중앙정부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임. 다만 양호한 주거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입지수요가 높은 지역에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유통), 준공업지역만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되었음.

시행령」에서 완화(준공업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된 사항은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음.(안 제35조 관련 별표2)

- 셋째, 안 제54조제11항은 위 법률 시행령에서 녹지지역내 건폐율 완화대상인 전통사찰, 등록문화재, 한옥의 경우 ‘기존 건축물’에서 신축 건축물도 가능토록 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 넷째, 안 제54조제13항 및 안 제55조제19항은 위 법률 시행령에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sup>2)</sup>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규정 범위(각각 150%, 120%)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는 완화 범위를 각각 120%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측면으로 보임.
  - 그 밖의 개정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의 별표 개정에 따라 이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이상의 개정 사항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법체계에 맞추어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법체계상 논란의 요소는 없다고 보임.
- 다만,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입지규제를 다소 완화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나, 본 조례개정 내용은 현재의 규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향후 후속연구 등을 통해 시대에 맞지 않는 입지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2) 자연재해 관련 각종 대책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를 “시행에 필요”로 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차목·타목 및 과목”을 “거목·더목 및 러목”으로 한다.

제29조제9호나목 중 “별표 8”을 “별표 1”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철도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및 하역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건축물
  -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나. 액화가스취급소
  - 다. 액화가스판매소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마.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바. 도료류 판매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 한한다)

나. 차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는 제외한다) 및 주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교정시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영 별표 8 제1호의 다목 및 라목 규정에 따라”로, “계산한다.이하”를 “계산한다. 이하”로, “영 별표 8 제1호아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같은 호 자목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

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 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은 제외 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작물 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교정시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② 영 별표 9 제1호의 가목 및 나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는 영 별표 1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을 제외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작물 재배사
    - 나. 종묘배양시설
    -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 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② 영 별표 10 제1호의 나목 및 다목, 제2호마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

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유통상업지역안에서  
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폐차영업  
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  
설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  
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별표 11 제1호마목 및 제2호자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  
표 1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다만,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1호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2008.7.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나목 중 “별표 8”을 “별표 1”로 한다.

제37조제13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나목 중 “별표 8”을 “별표 1”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5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3조제2항제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4조제1항제9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7조제12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48조제16호 중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한다.

제54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기준”을 “영 제84조제5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35조제2호, 제7호 관련”을 “제35조제1호 관련”으로 하고 제2호 가.중 “제35조제2호 및 제7호”를 “제35조제1호”로 하며 제4호의 가.중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 영 별표 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 8. (생략)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너비 8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것에 한한다),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생략)

- 나. 「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 바. (생략)

10. ~ 16. (생략)

제30조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다만,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  
-----

1. ~ 8. (현행과 같음)

- 9. -----  
-----  
-----  
-----  
-----  
-----  
-----  
-----  
-----

가. (현행과 같음)

- 나. -----  
-----  
-----  
-----  
별표 1-----  
-----

다. ~ 바. (현행과 같음)

10. ~ 16. (현행과 같음)

제30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주거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 시설(철도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 매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 수시설 중 철도시설

5. (삭제)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 무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 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 은 법 제34조 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폐수배 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 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 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 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 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 고시설(창고 및 하역장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 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건축물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가스취급소

다. 액화가스판매소

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 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 장소

마.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바. 도료류 판매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 동차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에 한 한다)

나. 차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는 제외한다) 및 주기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 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가축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 축물

가.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 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및 집배송시설 제외)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가스취급소

다. 액화가스판매소

라.  시내버스타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마.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바. 도료류 판매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검사장

라. 매매장

마. 정비공장(자동차종합정비공장을 제외한다)

바. 운전학원·정비학원(운전 및 정비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

나.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및 갱생보호소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구청장이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한다)

나.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31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별표 8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

제31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영별표 8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별표 8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

- 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

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교정시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주거지역 경계가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도로 너비를 거리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한다.이하 같다)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8

② 영 별표 8 제1호의 다목 및 라목 규정에 따라 -----  
-----  
----- 계산한다. 이하 ----- 「건축법 시

제1호아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과 같은 호 자목의 위락시설로의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미터 초과 200미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

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

제32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9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생활권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

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9 제1호 가목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② 영 별표 9 제1호의 가목 및 나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단, 제5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인 것에 한하고, 영 별 표 9 제1호 차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 시설과 같은 호 카목의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3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 표 10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 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 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 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 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 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 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 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제32조 제2항에 따른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 장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으로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 는 것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 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 2항에 따른다.

제33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 는 건축물) ①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 표 10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 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 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 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 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 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55 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은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 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의 공장과 아파트형공장을 제외한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 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 소·저장소·취급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 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작물 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별표 10 제1호 나목의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이하인 것(단, 제 55조제3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여 영 별표 10 제1호 과목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 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4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영 별표 10 제1호의 나목 및 다목, 제 2호마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4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 유통상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1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1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중  
교시설
4. (삭제)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  
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  
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  
무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  
락시설. 다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  
00미터 이내의 지역안에서는 제31조  
제2항에 따른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  
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  
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  
시설을 포함하고, 위험물제조소, 위험  
물저장소 및 위험물취급소와 시내버  
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  
장소는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하되  
폐차영업소는 포함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제2조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연  
료전지·지열에너지·수소에너지를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속  
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  
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  
소·저장소·취급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  
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폐차영업소  
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  
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설  
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  
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2호에 따  
른 태양에너지·연료전지·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  
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  
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  
광휴게시설

이용한 발전소와 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에 한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제35조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제2호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2008.7.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

② 영 별표 11 제1호마목 및 제2호자목 규정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다.

제35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4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4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 건축하는 공동주택(다만,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과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1호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2008.7.30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  
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  
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중  
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관  
매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  
유자시설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이 되는 노인복  
지주택(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노인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 다  
만,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  
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  
동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  
무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보전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

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  
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  
정 및 군사시설(라목 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  
광휴게시설

제36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 -----

표 15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12. (생략)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표 16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6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생략)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 마. (생략)

9. ~ 12. (생략)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 15. (생략)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영 별

각 목

1. ~ 12. (현행과 같음)

제37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각 목

1. ~ 7. (현행과 같음)

8. -----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별표 1-----  
-----

다. ~ 마. (현행과 같음)

9. ~ 12. (현행과 같음)

13.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 15. (현행과 같음)

제38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 17 제1호의 각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 1. ~ 8. (생략)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지식산업센터·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가. (생략)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 마. (생략)

10. ~ 13. (생략)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 14. (생략)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략)

② 영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 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각 목 -----

1. ~ 8. (현행과 같음)

- 9. -----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별표 1 -----

다. ~ 마. (현행과 같음)

10. ~ 13. (현행과 같음)

제3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  
-----  
-----

1. ~ 14. (현행과 같음)

15.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43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  
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7. (생략)

③ ~ ④ (생략)

제44조(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에  
따라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안  
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  
는 아니된다.

1. ~ 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  
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물)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보  
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 11. (생략)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 15. (생략)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물)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용시설보  
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15. (생략)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17. ~ 18.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 자  
원순환 관련 시설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용도제한) ① -----

-----

----- 각 호-----

-----

1. ~ 8. (현행과 같음)

9. ----- 자  
원순환 관련 시설

10.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물)-----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자  
원순환 관련 시설

10. ~ 15. (현행과 같음)

제4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

물)-----

-----

-----

1. ~ 15. (현행과 같음)

16. ----- 자  
원순환 관련 시설

17. ~ 18. (현행과 같음)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⑩ (생략)

⑪ 법 제77조제4항제2호 및 영 제84조 제5항제4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 3. (생략)

⑫ (생략)

<신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⑱ (생략)

<신설>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영 제84조제5항 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의-----

-----  
-----

1. ~ 3. (현행과 같음)

⑫ (현행과 같음)

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 ⑱ (현행과 같음)

⑲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